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중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범위는 예금의 잔액 및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개정(안 제11조)
-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개선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 1)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

-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함
-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함
-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함
- 4)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이행의 기준은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함
- 5)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하려는 경우,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6)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운전면허 정지 신청, 출국금지 신청 및 명단 공개의 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18조)

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폐지(현행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등본·초본”을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장에게 문서”를 “이사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사·질문의 범위 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질문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금융정보등의 범위)”를“(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을 “여성가족부장관이”로, “금융정보,”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최근”을 “예금의 잔액 및 최근”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금융정보등의 요청)”을“(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을“(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④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언론의 요청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은 제공받은 정보를 보도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 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비정기적으로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 중 일부만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등,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법 제27조제2항제2호 별칙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기간·방법)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

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법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

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의 결정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인 이상)를 양육하는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 및 그 밖의 중증의 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선지급금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행관리원의 장

은 선지급 대상자가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 사유
2. 반환명령 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④ 제3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선지급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이 속한 달 이후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한 경우

2. 법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과 독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8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로, “반환금액”은 “회수금액”으로 본다.

제17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금 처리 방식)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1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2.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3.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제17조의5제2항 각 호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1조의12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본다.

제17조의13(전산관리시스템 수집·보유·이용 정보) 법제21조의15제3항 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2.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6.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제18조제1항제3호 중 “따른”을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

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각 호 및 제3항”을 “각 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로 한다.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 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정성 검토
 - 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마. 그 밖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의 신청접수
 -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 다.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정성 검토
 - 라.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마.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9.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의 신청접수
 -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 다.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정성 검토
 - 라.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마. 그 밖에 명단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10.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선지급 신청인 가구 및 선지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 제1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따른”을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및 해제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

청, 양육비 선지급 여부의 결정,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9 및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반환명령 및 회수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2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9조제4호에 따른다.

[별표 1]

제공 요청 대상 관계 기관 및 자료의 범위(제10조 관련)

1.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자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4. 법원행정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 자료
5. 해양수산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9. 국방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1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12.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3.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정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별표 2]

양육비 선지급 사유 발생 변경 상실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17조의11 관련)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근로장려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자료
6.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자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11.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1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4.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15.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에 관한 자료

18.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
19.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
한 자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21.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2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23.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
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사정보시스
템에 등록된 사망자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
단 관련 정보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관한 자료
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

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
27.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7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 -----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 ----- -----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	② ----- 법 제13조제1항제3호----- ----- ----- 이사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받을 수 있다.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삭 제>

한다.

④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삭 제>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수사유

2. 징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9조의2(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삭 제>

원의 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질문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국세·지방세 및 토지·건물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질문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공 관계 기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삭 제>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

<삭 제>

	<u>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u>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u> 에 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 야 한다.	② ----- <u>법 제17조 제2항</u> ----- ----- ----- ----- ----- -----.
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② (생략)	제13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여성 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 ----- ----- ----- ----- 문서-----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 청) ① ----- ----- ----- -----.
1. 2. (생략)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 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 ③ (생략)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 ----- ----- -----.
1. 2. (생략)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 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 ③ (생략)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

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 ----- --.
<신 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1.·2. (생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른 언론의 요청은 공개요청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목적, 공개 시점 및 공개 기간과 공개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언론은 제공받은 정보를 보도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 설>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 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비정기적으로 이행하거나 양육비 채무 중 일부만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신 설>

다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 제공명령 등,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법 제27조제2항제2호 벌칙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기간·방법)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

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본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

<신 설>

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법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금액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의 결정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

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인 이상)를 양육하는 경우

3. 가구의 구성원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 및 그 밖의 중증의 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미성년, 무자력, 질병 등으로 선지급금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

가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 사유
2. 반환명령 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 납부 신청방법

④ 제3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선지급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 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이 속한 달 이후 정기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한 경우
 2. 법 제21조의8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 경우
- ③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과 독촉에 관하여는 제17조의8제4항

<신 설>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로, “반환금액”은 “회수금액”으로 본다.

제17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금 처리 방식)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1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

2.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3.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제17조의5제2항 각 호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신 설>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21조의12 및 같은 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13(전산관리시스템 수집·보유·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

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2.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6.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의 업무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
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1. 2. (생략)

3.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4. 5. (생략)

<신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따른 양육비 채
무자의 -----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
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
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다
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철회 요청의 신청접수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
전 통지 및 의견청취

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정성 검토

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
부 모니터링

마. 그 밖에 운전면허 정지처

<신설>

<신설>

분 요청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
지 요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
의 신청접수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
전 통지 및 의견청취

다.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적정성 검토

라. 출국금지 또는 해제 요청
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
부 모니터링

마.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제
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
항

9.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
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
의 신청접수

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
전 통지 및 의견청취

다.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u>조사 등 적정성 검토</u> <u>라. 명단공개 또는 명단삭제</u> <u>대상자의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u> <u>마. 그 밖에 명단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u>		
<u><신 설></u>	10.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선지급 신청인 가구 및 선지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④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	⑤ ----- 각 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무 5. 6. (생 략) 7.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 1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6. (현행과 같음) 7. ----- <u>다른 양육비 채무자의</u> ----- 8. ~ 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해제에 관한 사무 15. 법 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양육비 선지급여부의 결정,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16.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신 설>	17. 법 제21조의9 및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반환명령 및 회수에 관한 사무
<신 설>	18.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신 설>	19.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신 설>	20.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 ----- 별표 3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47